

국무총리 지시
제2014-1호

2014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

2014. 1



국무조정실
공직복무관리관실

목 차

I . 2014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	1
II . 2014년 공직복무 확립 대책	2
1. 기본방향	2
2. 중점 추진사항	3
III . 행정사항	8

【붙임】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(작성 양식)

- 금년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로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성과 가시화 및 국정운영 장애요인에 대한 관리가 긴요한 시기
 -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기초로 한 국정과제·정책현안과제 등의 차질없는 추진 및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
 - 특히, 경제활성화, 민생안정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이 긴요
 - 그러나,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
 - 갈등현안과 2단계 세종시 이전 및 지방선거 등 안정적 국정 운영 저해요소 산재 등으로 인한 국정역량 분산 우려
 - 공공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부정·비리 발생으로 인한 정부 신뢰도 저하 및 각 부처의 ‘제식구 감싸기식’ 온정적 처분 관행 잔존
 - 국민들의 눈높이 변화에 따른 공직 청렴도 기대수준 상향과 함께 공직비위 행태의 다양화·지능화 지속
- ⇒ 국정운영의 추동력 확보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철저한 공직복무관리 추진

- ◇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,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,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(대통령, '13.8.15, 68주년 광복절 기념사)
- ◇ 정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, 공직사회의 제1의 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임(국무총리, '13.11.14, 국가정책조정회의)

1. 기본방향

목 표

- ◆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추진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원하여 국정성과 창출 및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 구축
- ◆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,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

부정·비리 취약부문·분야별 맞춤형 점검

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성과 창출형 점검

일상적 반복 점검 +기획점검·제도개선 ⇒ 비위요소 발본색원

- 정책점검을 강화,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 뒷받침**
 -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의 추진실태 점검·개선
 - 잠재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적극행정 조장
- 비정상적 관행·부조리 척결**
 - 구조적·관행적 비위를 중점 점검, 「비정상의 정상화」 추진 뒷받침
 - 부조리 취약분야 기획점검 및 민생현장의 부정·비리 근절
- 공직기강 확립 활동의 실효성 제고**
 - 취약부서·취약시기 등 점검활동에 선택과 집중
 -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
 - 공직 부패·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 및 제도 개선
-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**
 -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
 - 적극행정 실천자 및 일선 현장의 모범공무원 발굴·포상

2. 중점 추진사항

가. 정책점검을 강화,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 뒷받침

①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추진실태 점검·개선

-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, 협업과제, 갈등현안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 조치
 - 과제별 목표를 국민·수요자 입장의 정책효과로 설정하지 않고 대책 마련, 법안 제출 등 단순 수단만 제시하는 무사안일 업무행태 집중 점검
 - 특히, 부처간 협업을 저해하는 부처 이기주의, 칸막이 행태 등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중점 점검 실시
- * 점검결과, 인적요인에 기인하여 주요 정책추진, 대책마련이 지연된 경우 엄중 조치
- 부진원인에 따라 시책·제도의 보완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(직무태만, 무사안일 등) 병행
 - 유관부서간(시책담당 및 평가·감사담당 부서) 수평적·수직적 분업과 협업을 통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짜임새 있게 점검
- * 주요 국정과제 및 범부처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(공직복무관리관실) 주관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

② 잠재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적극 행정 조장

-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,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불신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시정
 - 특히, 주요 개혁과제가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 방지
-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불문처리하여 적극 행정 조장·유도

나. 비정상적 관행·부조리 척결

① 구조적·관행적 비위를 중점 점검, 「비정상의 정상화」 추진 뒷받침

- 부정·비리의 온상이 되는 공공부문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, 낡은 제도에서 파생된 비리에 대한 중점 점검
 - 복지급여, 농업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수급 관련 공직자 비리
 - 공공기관의 예산 편법집행 등 예산낭비 및 방만경영 관련 비위
 - * 출장여비·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, 법인카드 변칙사용, 임차사택 무상지원, 과다한 임직원 급여·복리후생비 지급, 퇴직예정자에 대한 과다지원(고기기념품, 명예퇴직금) 등
 -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감독부처의 친인척 특혜채용 등 도덕적 해이
 - 원전·방위사업·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관리 부실 및 납품비리 등
- 과거와 달리 국민의 의식변화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관행·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 개선·시정
 - * 퇴직공직자 전관예우, 민간에의 재취업 알선, 교통 숙소등 편의수혜, 행시협찬 강요등 관행
- 각 부처 공통의 불합리한 제도·관행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(공직복무관리관실)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

② 부조리 취약분야 기획점검 및 민생현장의 부정·비리 근절

- 부정·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집중 점검
 - 공사·용역 발주, 건설현장, 환경·위생, 교육, 세무, 노동 등 구조적·반복적 부조리 취약 분야
-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 관련 부조리 등 점검
 - 민·관 결탁을 통한 이해집단 비호, 상납 등 지역토착 비리
 - 인·허가 관련 민원, 생계형 부조리 단속 등 민생 관련 부정·비리

다. 공직기강 확립 활동의 실효성 제고

① 취약부서·취약시기 등 점검활동에 선택과 집중

- 취약부서 등 근무자에 대한 감찰 강화
 - 대민업무 및 대민접촉이 잦은 부서 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
 -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당한 알선·청탁, 금품수수 등 집중 점검
- 정부합동(중앙·지방·공공기관)으로 계기별·맞춤형 점검 실시
 - '14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점검
 - 정부청사 2단계 세종시 이전 관련 복무기강 지속 점검
 - 명절·휴가철·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 방지
 - 해외공관 등 외국 주재관 대상 공직기강 점검 활성화
 - * 국조실, 감사원 등 해외공관 점검을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 확보
 -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관리 기반시설 등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

②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

- 국조실 중심으로 각 부처 감사·감찰 기능간 협업망 구축
 - 연 2회 정례회의 및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활성화
 - * 공직복무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협의, 각 기관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
- 취약시기 등 필요시 정부합동(중앙·지방·공공기관) 점검 실시
 - * 부처 및 공공기관의 공통적인 비정상 관행 발굴·점검, 취약시기 복무기강 점검 등
- 국조실 중심으로 전 부처 공직기강 활동의 체계적 관리 강화

-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자체 감찰활동 강화
 - 자체 감찰기능 강화 및 청렴하고 유능한 인력 배치
 - * 감찰활동 우수직원에 대해 승진·포상 등 우대방안 마련
 - 공직비위 내부신고망 활성화, 공직비위 인터넷 접수 창구 개설·확대 및 외부 신고에 대한 감사 강화
 - * 내·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조치 병행으로 비위신고 활성화 유도
 - 자체 자정활동 및 청렴교육 등 기관장 관심도 제고
 - 「부정청탁 금지법」 제정 관련 교육·홍보 및 예방 점검 등 사전대비
 - * 공직자 윤리의식을 「부정청탁 금지법(안)」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상향

[3] 공직 부패·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 관행 확립 및 제도개선

-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 대한 ‘무관용 원칙’ 적용 등 신상필벌 강화
 -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적발시부터 처벌(징계, 수사)시까지 지속 체크
 - *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력조사 실시(국조실, 감사원, 수사기관 등)
 - 적발된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‘무관용 원칙’ 적용
 - 공무원비위사건처리기준 엄격 적용, 온정적 처분사례 조사시정
 - 공금횡령, 금품·향응수수 등의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각 부처별 「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」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강화 추진
- 공직비위사건 처리기준, 중앙징계위 처분관행 등 제도 개선
 - 중요 공직비위에 대한 **포상감경 제한**
 - *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 제1항 개정 필요(금품·향응수수, 횡령, 유용은 기 제한)
 - 징계위·소청위 심사시 최초 감찰담당관 출석 및 의견 개진 강화
 - *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 제4항 개정필요(현재는 필요시 출석토록 임의규정)
 - 형사상 무혐의 처분, 무죄 판결 사안도 행정적 징계조치 적극 검토
 - *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공무원행동강령」 위반 해당 여부 검토

라.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포상

①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

-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·시행
 - * 공직사회의 이미지 개선, 소속직원 연가 활용 보장,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기관장 격려 등
-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처별 고충상담 창구 설치·운영 (가급적 인사부서와 일원화 운영) 등 공직자 고충 해소방안 강구
 - * 인사철 등에 허위·음해성 투서·신고 등으로 인한 상대방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, 음해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가 되도록 하여 신뢰문화·공직건전성 추구

② 적극행정 실천자 및 일선 현장의 모범공무원 발굴·포상

- 적극 행정 실천자 및 청렴·성실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,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
 - 기존의 업무관행을 타파하여 국민입장에서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·추진한 정책부서의 모범공직자
 - 일선 행정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사회봉사를 솔선수범한 청렴·성실한 모범공직자
-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과 병행하여 모범 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정례적으로 자체(기관장) 포상하는 제도 마련
 - 가급적 하위직·일선근무자 위주로 발굴하여 자체 포상하고, 공적이 탁월한 경우 국무조정실로 정부포상 건의
- * 국무조정실은 매년 정부합동점검단의 현장활동 과정에서 발굴한 '공직복무 우수공무원'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

□ 기관별 「2014년 공직복무관리계획」 수립·추진

- 금번에 통보된 중점추진사항 등을 반영한 자체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수립, 2014. 2. 17.까지 국무조정실에 통보하고 추진
 - * 자체계획 수립시 ①국정과제 및 주요시책의 추진실태 점검계획 ②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계획 ③공직비위 점검계획(취약분야 기획점검 포함) ④감찰기능 강화 및 자정활동 추진계획, ⑤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등을 포함 시키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
-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따라 부처별 자체 세부지침을 별도 마련·시행
 - * 자체 세부지침 수립 및 추진 대상 기관의 범위는 산하단체 등의 규모,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
 -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·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구조적·관행적 부조리, 금품수수 등 비위, 근무기강 등을 철저히 점검

□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·평가

- 각 부처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국무 조정실로 제출 → 각 부처별 추진실적은 연말 종합평가
 - 각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복무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하는 등 이행상황을 관리
-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및 비위공직자 조치,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을 수시 분석·점검
 - * 산하단체 등의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관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

□ 다른 지시사항의 폐지

- 「2013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」(국무총리 지시 제2013-1호)은 폐지함

【불임】

○/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(누적)

(기 관 명)

1. 총 평

- 시기별 공직복무관리 여건이나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을 고려하여 해당분기에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의 성과나 진행사항을 기술

ex) 0/4분기 공직복무관리 여건이나 자체 공직복무관리계획상 0/4분기 중점 추진대상 업무를 기술하고, 성과나 진행상황을 개괄적으로 기술

2. 분야별 추진실적(분기별 누적 작성)

① 정책점검 추진실적

(1) 개 요

- 국정과제, 협업과제, 갈등현안과제, 잠재현안 중 추진부진 과제나 적극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인적요인 개선·조치사항을 기술(점검배경, 경과, 조치 등 위주)

ex) 부처소관 국정과제, 협업과제, 잠재현안 등 각각 기술, 인적요인으로 인해 추진이 부진한 과제에 대한 점검실시 내용 및 결과 기술, 적극 대응이 필요한 잠재현안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(무사안일한 대응의 경우) 및 불문처리(적극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의 경우) 사항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

(2) 주요 추진실적

① 제 목

현황 및 문제점(과제수행, 현안업무 추진 저해요소 등 기술)

○

개선조치 내용(개선이 진행중이면 추진상황 기술)

○

파급효과(기대되는 내용)

○

②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실적

(1) 개 요

○ 각 부처 소관 공공부문 정상화 과제 뿐만 아니라 자체발굴한 비정상적 관행·제도의 정상화·개선실적을 기술

ex) 부처소관 공공부문 정상화 과제 및 자체발굴한 비정상적 관행·제도 전체를 기술, 점검·개선 조치한 과제(또는 관행·제도) 및 문제점·점검·개선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

(2) 주요 추진실적

① 제 목

현황 및 문제점

○

개선조치 내용(개선이 진행중이면 추진상황 기술)

○

파급효과(기대되는 내용)

○

③ 공직비위 점검 및 조치 실적

(1) 자체 점검 및 조치 실적

1) 개 요

- 자체 점검내용을 일반 점검활동(비위유형별 구분, 정책추진 관련 인적요인 점검 포함)과 취약분야 기획점검활동으로 구분하여 점검배경·경과·조치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

<자체점검 조치 실적>

기간	구분	적발인원	조 치 결 과			
			중징계 (공직배제)	경징계	주의, 경고	조치진행중
0/4분기	본부(소속기관 포함)					
	공공기관 등					
	계					

* 공직배제 인원(괄호)은 내서.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작성

2) 사안별 점검·조치 내용 ⇒ 모든 점검활동 내역 기재

구분	점검시기	점검대상	점검내용 및 결과	조치사항*
금품·향응 수수 관련	'14.2.1 ~2.4	OO공사 부장 000	비위내용 및 점검결과 요약기술	중징계 (정직1월)
복무기강				
공금횡령·유용				
품위손상				
기타**				

*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00진행 중으로 기재(ex 자체진행중 or 중징위진행중)

** 구분되지 아니한 행동강령 위반사항,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, 정책추진 관련 인적요인 점검 등

☞ 취약분야 등 기획점검의 경우는 점검내용 및 결과 기재란에 (취약분야 기획점검) 표시

(2) 외부통보사항 조치

1) 개 요

- 통보기관별·비위유형별 통보사항을 기술하고,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

<외부통보사항 조치 실적>

기간	구분	적발인원	조 치 결 과			
			중징계 (공직배제)	경징계	주의, 경고	조치진행중
0/4분기	본부(소속기관 포함)					
	공공기관 등					
	계					

* 공직배제 인원(괄호)은 내서.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각각 작성

2) 사안별 현황 ⇒ 모든 통보내역 기재

구분	통보기관	비위자	비위내용 및 결과	조치사항*
금품·향응 수수 관련	국조실	OO공사 부장 000	비위내용 및 점검결과 요약기술	중징계 (정직1월)
복무점검				
공금횡령·유용				
품위손상				
기타**				

* 징계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00진행 중으로 기재(ex 자체진행중 or 중징위진행중)

** 구분되지 아니한 행동강령 위반사항,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, 정책추진 관련 인적요인 점검 등

④ 감찰기능 강화 및 자정활동 추진 실적

(1) 개 요

○ 각 활동의 추진배경 및 경과, 실적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

(2) 주요 추진실적

1)

○ 자체 우수 감찰인력 배치, 감찰활동 우수인력에 대한 포상·인센티브 부여 실적, 내부신고망 구축·운영, 활성화, 중대비위 징계감경 제한 실적, 자체공직복무 관련 청렴교육(「부정청탁 금지법」 제정 관련 교육·홍보 등 포함) 등 자체 자정활동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

⑤ 공직자 사기진작 추진 실적

(1) 개요

- 각 활동의 추진배경 및 경과, 실적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

(2) 주요 추진실적

1)

- 소속 직원 연가활동 보장, 선량한 공직자 보호를 위한 고충 창구 설치 및 운영실적, 우수공직자 기관장 표창·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실적, 적극행정 면책실적 등을 구분하여 기재

☞ 위의 분야별 추진실적 서식은 필요한 경우, 기관별 실정에 맞게 해당 항목을 적의 조정하여 제출 가능